

<b>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위험] [운용전환일 이후 : 5등급]</b>					
<b>1</b>	<b>2</b>	<b>3</b>	<b>4</b>	<b>5</b>	<b>6</b>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운용전환일 이후 :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베어링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5년 07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08월 14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5년 08월 18일 ~ 2025년 08월 29일  
 \* 이 투자신탁의 신규 정정(취소) 거래는 판매회사에서 정하는 상품 모집기간 내 이 투자신탁의 거래가능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서면문서: 베어링자산운용(주),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요약정보>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 [붙임] 용어풀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 시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모집기간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50억원(선취판매수수료 차감후 기준) 미만일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하락 등의 요인으로 주식관련자산의 매도로 인한 실현이익이 목표기준가격에 상당하는 이익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주식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관련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관련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매매하는 날의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주식관련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의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관련자산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펀드의 등록신청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요약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5.07.25.)

#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 EN370)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위험]**  
**(운용전환일 이후 : 5등급[낮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베어링 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2 등급(운용전환일 이후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b>투자목적 및 투자전략</b>	<p>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목표기준가격(Class A 수익증권 기준 누적기준가격 1,080 원)에 도달하여 운용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운용전환일 이전]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의 기업분석을 통해 높은 배당수익과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함으로써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p> <p>[운용전환일 이후]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도달 시 주식관련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대상자산의 6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p>										
<b>분류</b>	투자신탁 / 증권형(주식형), 단 운용전환일 이후 증권형(채권-재간접형) / 개방형(중도환매가능) / 단위형(추가납입불가능) / 종류형										
<b>투자비용</b>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기간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4년	5년	
	납입금액의 1.0% 이내	운용 전환일 이전	1.035%	0.300%	1.360%	203	308	414	523	633	
		운용 전환일 이후	0.235%	0.100%	0.340%						0.335%
	없음	운용 전환일 이전	1.635%	0.900%	1.580%	165	333	504	677	853	
		운용 전환일 이후	0.385%	0.250%	0.400%						0.485%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운용 전환일 이전	0.885%	0.150%	1.030%	0.885%	139	229	321	414	508
		운용 전환일 이후	0.185%	0.050%	0.260%	0.2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운용 전환일 이전	1.185%	0.450%	1.160%	1.185%	120	241	365	490	618
		운용 전환일 이후	0.255%	0.120%	0.260%	0.355%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 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투자수익률은 종류 A 기준 투자기간 동안 총 수익률 8% (만기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신탁 계약기간 5년)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운용전환후 연 0.1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예상치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이 투자기간(최대 5년) 동안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경우 **종류 A 형과 종류 C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 종류 Ae 형과 종류 Ce 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2025년 6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 인력**

(2025.07.2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b>[운용전환일 이전]</b>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2 개	14,232 억원 (팀운용)	16.91%	15.39%	16.99%	15.11%	23년 2개월	
김혜용	1980	부책임 운용역	3 개	749 억원 (팀운용)	16.56%	12.06%				
<b>[운용전환일 이후]</b>										
김범석	1963	책임 운용역	5 개	992 억원 (팀운용)	9.44%	8.87%	5.63%	6.64%	29년 4개월	
권태남	1979	부책임 운용역	2 개	1,045 억원 (팀운용)	3.35%	-			15년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http://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 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각 운용역 간의 성과 차이 및 운용역 성과와 회사 성과 차이는 전략 및 혼합유형 차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p><b>투자자 유의사항</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2.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3.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4.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5.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6.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b></li> <li>7. 이 투자신탁은 모집기간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50억원(선취판매수수료 차감후 기준) 미만일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o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참조</p>														
<p><b>주요투자 위험</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 </tr> <tr> <td>주식가격 변동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부도 등의 위험</td> <td>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td> </tr> <tr> <td>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운용전환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목표전환 미달성 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 달성을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유동성위험</td> <td>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급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운용전환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표전환 미달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 달성을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급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운용전환과정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목표기준가격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표전환 미달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 달성을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급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b>매입방법</b></p>	<p>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p>														
<p><b>환매 수수료</b></p>	<p>· 해당사항 없음</p>														
<p><b>기준가</b></p>	<p>· 산정방법 : (직전일의 자산총액 -부채총액)/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barings.com/ko">www.barings.com/ko</a>),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 투자협회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p>														
<p><b>과세</b></p>	<p>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천징수되며(개인 및 일반 법인 15.4%),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p>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b>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b>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b>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b>※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		
<b>전환절차 및 방법</b>	해당사항 없음		
<b>집합투자업자</b>	베어링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barings.com/ko">www.barings.com/ko</a> )		
<b>모집기간</b>	2025년 8월 18일 ~ 2025년 8월 29일	<b>모집 · 매출 총액</b>	
<b>효력발生日</b>	2025.08.14		
<b>존속기간</b>	최초설정일로부터 <b>5년</b> 간. 다만, 계약기간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간 2.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전체 투자신탁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barings.com/ko">www.barings.com/ko</a> )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b>집합투자 기구의 종류</b>	<b>종류(Class)</b>		
	<b>집합투자기구의 특징</b>		
	<b>판매 수수료</b>	<b>수수료 선취(A)</b>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Class A 기준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약 Class A 기준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수수료 미징구(C)</b>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Class A 대비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Class A 대비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판매 경로</b>	<b>온라인 (e)</b>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b>오프라인</b>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b>기타</b>	<b>기관(F)</b>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또는 5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나 1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랩(W)</b>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개인연금 (P)</b>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퇴직연금 (P2)</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EN37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EN37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EN3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EN3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EN3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EN3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EN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EN3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EN3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EN3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EN380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형(주식형), 단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증권형(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이 모집(판매) 가능한 수종의 수익증권 총 좌수는 **10조좌(1좌당 1원, 원본액 기준)**까지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은 하지 아니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판매)기간: 2025년 8월 18일 ~ 2025년 8월 29일  
 나. 모집(판매)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판매)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의 명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EN37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EN37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EN3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EN3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EN3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EN3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EN3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EN3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EN3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EN3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EN380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09.01	- 최초 설정 (예정)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간

나.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운용 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 다만, 전체 투자신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운용전환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거래정지 등 투자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내에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내에 해당 종목의 거래가 재개되어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합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정의>

<p>※ <b>운용전환일</b> :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영업일을 말합니다.</p> <p>※ <b>목표기준가격</b> :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누적기준가격이 1,080원임을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을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으로 합니다.</p> <p>가. Class A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나. Class Ae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다. Class C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라. Class Ce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마. Class C-P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바. Class C-Pe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사. Class C-P2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e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아. Class C-P2e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자. Class C-F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W수익증권의 누적 기준가격</p> <p>※ <b>누적기준가격</b> : 이익분배금이 분배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p>
--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한 날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b>회 사 명</b>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b>주소 및 연락처</b>	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대표전화: 02-3788-05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2025.07.25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운용전환일 이전]									
최상현	1970	책임 운용역	12 개	14,232 억원 (팀운용)	16.91%	15.39%	16.99%	15.11%	23년 2 개월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다.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Class A 기준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약 Class A 기준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Class A 대비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Class A 대비 약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기금 또는 5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나 1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이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의 Class(종류)별 차이점**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0%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운용전환일 이전]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700	0.300	0.020	0.01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700	0.15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700	0.90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700	0.45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700	0.03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700	0.00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700	0.50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700	0.25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700	0.46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0.700	0.230	0.020	0.015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운용전환일 이후]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100	0.100	0.020	0.01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00	0.05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100	0.25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100	0.12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0.100	0.01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100	0.00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0.100	0.16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100	0.08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0.100	0.150	0.020	0.0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0.100	0.070	0.020	0.015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주1) 보수(집합투자기구에로부터 받는 금전)는 순자산총액의 연간 %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보수 외의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목표기준가격(Class A 수익증권 기준 누적기준가격 1,080원)에 도달하여 운용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 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0%)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로 한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유무상증자 또는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하거나,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즉시 매도한다.
②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인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⑥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증권의 대여 <sup>1)</sup>	보유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⑧	환매조건부 매도	보유 환매증권부 대상 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환매조건부대상증권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⑨	증권의 차입 <sup>2)</sup>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기타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에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적용예외]**

-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운용전환일 이전 5영업일간
  5.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가.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 하게 가. 투자대상 ⑥ 내지 ⑨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음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③ 동일법인 투자</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④ 집합투자증권 투자</p>	<p>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나. 상기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바.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77 조제 4 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⑤ 파생상품 매매</p>	<p>가. 주식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나.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 간</p>

		라.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⑥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후순위 채권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적용예외]**

- 1) 투자대상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 하게 상기 가.투자대상의 ⑥ 내지 ⑨, 나.투자제한의 ② 내지 ③의 본문, ④의 가목 내지 바목, ⑤의 가목 내지 다목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2) 나.투자제한의 ②의 본문, ④의 가목 내지 나목, ⑤의 가목 내지 다목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운용전환일 이후 편입하는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상장집합투자증권으로서 웹사이트(<https://data.krx.or.kr>)를 통해 주된 투자대상 및 전략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목표기준가격(Class A 수익증권 기준 누적기준가격 1,080 원)에 도달하여 운용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턴 운용전환일 전까지]**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합니다.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에 근거하여 현재 주가가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 중에서, 향후 기업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가치 중 주주에게 환원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함으로써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목은 1) 지속적인 이익증가로 충분한 주주환원 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 중인 기업가치 우수 기업군, 2) 시가총액 대비 충분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주 비중이 높아 주주환원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군, 3)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및 자본의 재구조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세부 종목 선정을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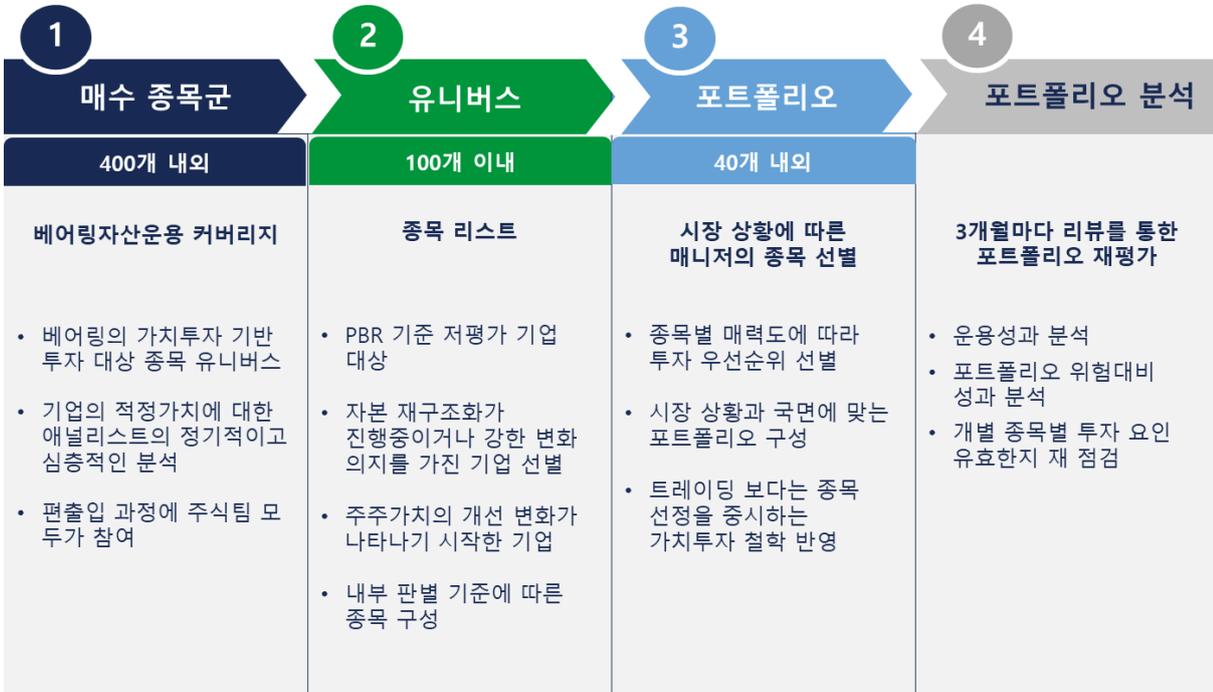
**- 주주가치 성장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예시**

기업가치 우수 기업군	주주환원 개선 기업군	거버넌스 개선 기업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과 건전한 재무구조</li> <li>높은 배당수익률, 배당성과와 DPS의 꾸준한 증가 추세</li> <li>ROE 대비 PER, PBR가 매력적인 수준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총액 대비 충분한 현금성자산 보유</li> <li>높은 비중의 자사주를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및 자본의 재구조화</li> <li>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배구조로의 개편 가능성</li> </ul>

- 예시 종목

기업가치 우수	주주환원 개선	거버넌스 개선
현대차 기아 iM 금융지주	엔씨소프트 제일기획	LG화학 한일시멘트 한국엔컴퍼니

- 투자 프로세스 및 리서치 과정



- 목표전환 시나리오 예시

**목표기준가격 : 1,080원**

- 목표기준가격은 투자신탁 계약기간 중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누적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 목표기준가격 도달에 따른 주식 처분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 (주식 처분 후 펀드 기준가격이 전환시의 기준가격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운용 전환일**

-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D)로부터 **5영업일(D+4)**

**목표 기준가격 달성에 따른 신탁계약기간**

-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 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에 상환
-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운용 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운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상환
- 투자신탁 최대기간 : 최초 설정일로부터 5년  
: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주식형 펀드로 운용되며, 펀드 만기 시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됨

주 1) 목표수익률 달성 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주식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수익률 달성일로부터 주가의 급격한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 기준이 되는 기간별 목표수익률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이후에도 채권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므로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가치변동이 가능합니다.

주 2) 신탁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전일까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식관련 자산을 전량 매도하여 해당기간의 누적수익률과 관계없이 만기일에 상환금을 지급합니다.

주 3) 펀드만기는 최초설정일로부터 최대 5 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6 개월 이내에 전환완료될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까지, 6 개월 경과 후 전환완료될 경우 전환일 이후 6 개월까지)

주 4) 전환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환과정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자의 최종수익률은 목표수익률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A 클래스 및 Ae 클래스의 경우, 선취수수료 부과로 인하여 투자자의 납입금액 기준 수익률이 펀드의 실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수익률은 A 클래스 기준으로 하므로, A 클래스 이외의 타 클래스 가입고객은 보수차이 등으로 인해 실현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일 이후부터 해지일까지]**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 도달 시 주식관련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수익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할 예정이며,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대상자산의 60%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 예정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대부분 투자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관련 ETF 를 주요 투자대상 종목 후보군으로 함
- ② 국내 채권 관련 ETF 의 경우 관련 익스포져, 총 비용, 거래량, 운용규모(AUM), 한도, 듀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③ 필요시 상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사운용팀 내부 협의를 통해 수익률과 위험요인을 감안한 종목 선정

**-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2025.07.25 기준)

유형	채권 ETF					
	KODEX 단기채권	ACE 단기통안채	TIGER 단기통안채	RISE 단기통안채	TIGER 단기채권 액티브	KODEX 단기채권 PLUS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요 투자대상	국내 채권	국내 채권	국내 채권	국내 채권	국내 채권	국내 채권
상장일	2012년 2월 22일	2013년 12월 23일	2012년 5월 16일	2014년 5월 19일	2017년 6월 29일	2015년 3월 3일
순자산총액	6,114억원	1,306억원	9,199억원	3,153억원	7,575억원	1조 5,411억원
듀레이션 (년)	0.46	0.54	0.43	0.35	0.59	0.56
만기수익률 YTM	2.37%	2.28%	2.27%	2.33%	2.47%	2.56%
기초지수	KRW Cash 지수 (총수익)	KIS MSB 단기 지수 (총수익)	KIS MSB 6M 지수 (총수익)	KIS MSB 5M 지수 (총수익)	KIS MSB 6M 지수 (총수익)	KRW Cash PLUS 지수 (총수익)
투자비중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주 1) 상기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용전환완료일 이후 편입이 예상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시장 현황,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목표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유의사항>**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도달한 날로부터 운용전환일까지의 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환일 이후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 향후 금리 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목표전환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비교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변경 시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및 영업소를 통하여 공시될 것입니다.

## 3) 위험관리

[운용전환일 이전]

이 투자신탁은 최대 편입비율로 주식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할 계획입니다.

[운용전환일 이후]

이 투자신탁은 시장 금리 변동에 과도한 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고, 운용전략회의에서 설정한 듀레이션 대비 일정 범위 내 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현금 보유 등 적정 유동성을 보유하여 펀드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할 계획입니다.

## 4) 유동성 위험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 주식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비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는 대규모 환매와 같이 유동성 위험의 증가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험 단계를 1,2,3 단계로 나눠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조치계획에 명시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 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사전에 정한 목표기준 가격(Class A 수익증권 기준 누적기준가격 1,080원)에 도달한 경우 주식관련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채권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운용이 전환되는 것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지

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 매입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율 축소 적용 등으로 인해 수익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전략 실행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금액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의도했던 투자전략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하락 등의 요인으로 주식관련자산의 매도로 인한 실현이익이 목표기준가격에 상당하는 이익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도 위험	이 투자신탁의 헤지 또는 환매를 위하여 주식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관련자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상황(매매하는 날의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주식관련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는 기준이 된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분 지체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의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용전환일 이후에도 해당 주식관련자산을 매도가능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매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표전환 미달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 달성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 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용실적 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계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수익증권 및 잔존 수익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준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이 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 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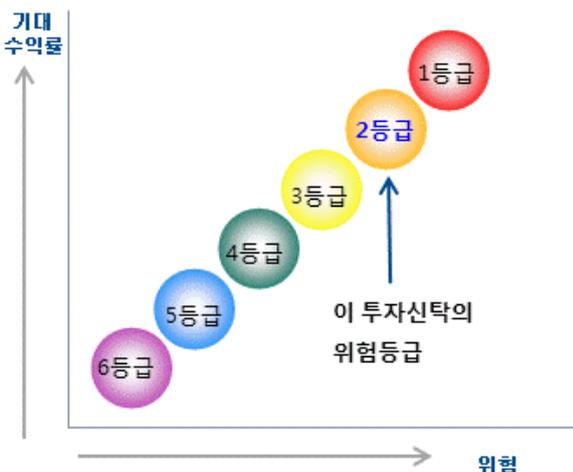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환일 이전에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주식 시장변동에 연동되어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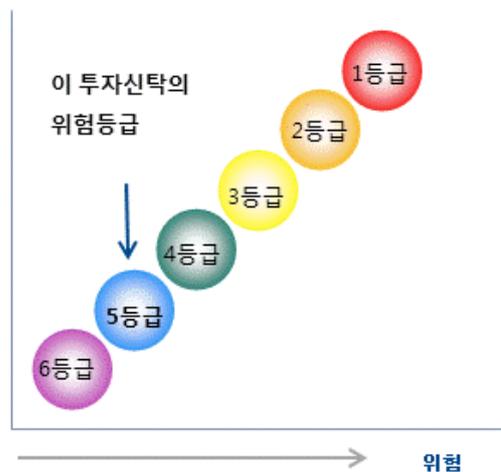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환일 이루어지기 전에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6등급 체계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수준의 투자위험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에는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의 수익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운용전환일 이전]**



**[운용전환일 이후]**



※ 이 투자신탁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험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 경과 이후 결산일 도래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베어링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4) 상세 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다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및 각 판매회사의 자체 상품위험등급에 따라 각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위의 투자위험등급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가입자격 내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1.0% 이내 징구)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0.5%이내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온라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최초 납입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혹은 최초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선취판매수수료 미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온라인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온라인 전용)

**3)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

-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 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신탁신탁을 의미합니다.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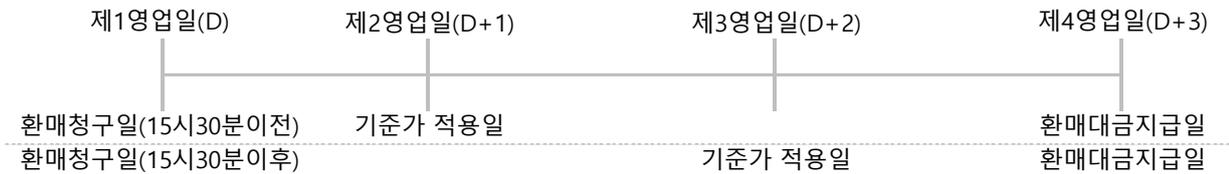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운용전환일 이전]

- 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운용전환일 이후]

- 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②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전자시스템에 따라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모집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운용전환일 이후부터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를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투자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은 나머지 자산(이라 "정상자산"이라 함)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제6항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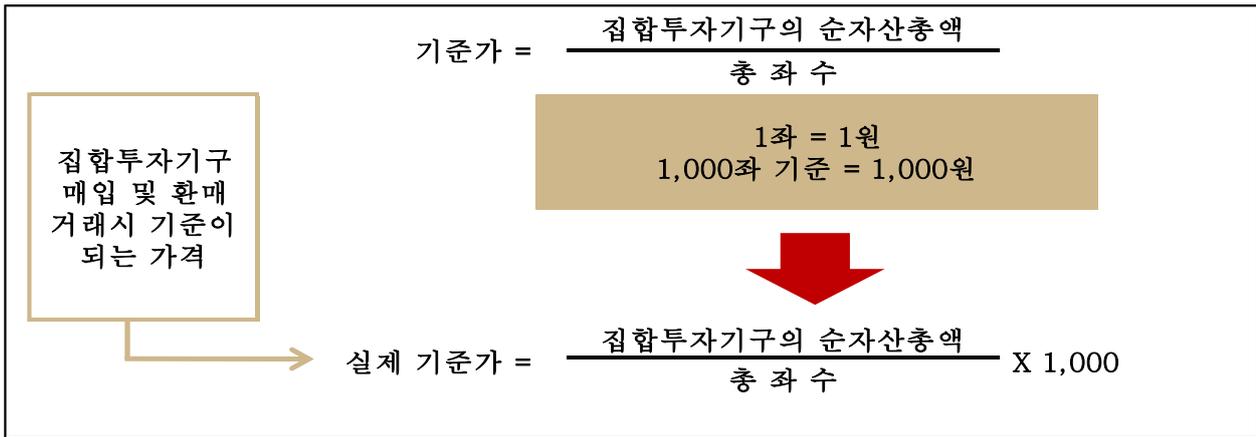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은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li> <li>-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li> <li>-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barings.com/ko">www.barings.com/ko</a>)·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의 인터넷 홈페이지</li> </ul>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기준가 산정



####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평가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대표이사, 주식운용 팀장, 채권운용 팀장, 준법감시인, 펀드오퍼레이션 팀장 등
- 2)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수탁재산의 적정가치를 유지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결정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등 부실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평가오류의 수정 또는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집합투자재산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9.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요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상기 상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구분 (Class)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전환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액의 1.0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액의 0.50%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웹형(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합니다.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까지]

구분	지급비율 (연간, %)
----	--------------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Class)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0.700	0.300	0.020	0.015	1.035	1.360	-	1.035	1.035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700	0.150	0.020	0.015	0.885	1.030	-	0.885	0.8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0.700	0.900	0.020	0.015	1.635	1.580	-	1.635	1.63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0.700	0.450	0.020	0.015	1.185	1.160	-	1.185	1.1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700	0.030	0.020	0.015	0.765	-	-	0.765	0.76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700	0.000	0.020	0.015	0.735	-	-	0.735	0.73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700	0.500	0.020	0.015	1.235	-	-	1.235	1.23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700	0.250	0.020	0.015	0.985	-	-	0.985	0.9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700	0.460	0.020	0.015	1.195	-	-	1.195	1.19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0.700	0.230	0.020	0.015	0.965	-	-	0.965	0.965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운용전환일부터 해지일까지]

구분 (Class)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보수	총 보수	(동종유형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 비용	총 보수 · 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 (A)	0.100	0.100	0.020	0.015	0.235	0.340	-	0.235	0.335	-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100	0.050	0.020	0.015	0.185	0.260	-	0.185	0.28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0.100	0.250	0.020	0.015	0.385	0.400	-	0.385	0.48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 (Ce)	0.100	0.120	0.020	0.015	0.255	0.260	-	0.255	0.35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형(C-F)	0.100	0.010	0.020	0.015	0.145	-	-	0.145	0.24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형(C-W)	0.100	0.000	0.020	0.015	0.135	-	-	0.135	0.23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0.100	0.160	0.020	0.015	0.295	-	-	0.295	0.39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0.100	0.080	0.020	0.015	0.215	-	-	0.215	0.315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P2)	0.100	0.150	0.020	0.015	0.285	-	-	0.285	0.385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P2e)	0.100	0.070	0.020	0.015	0.205	-	-	0.205	0.305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거래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금융비용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 후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7) 운용전환일 이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ETF(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는 예시 포트폴리오의 평균 보수/수수료는 운용전환후 약 0.10% 수준으로 추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8)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2025년 6월 말 기준)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2)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 관련비용
- ②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6개월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3년 6개월	4년	4년 6개월	5년
<b>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b>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총 보수비용	152	165								
	합성 총 보수비용	152	170								
수수료선취-온라인형	총 보수비용	96	106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Ae)	합성 총 보수비용	96	1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총 보수비용	85	106						
	합성 총 보수비용	85	1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총 보수비용	62	76						
	합성 총 보수비용	62	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총 보수비용	40	48						
	합성 총 보수비용	40	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총 보수비용	38	46						
	합성 총 보수비용	38	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총 보수비용	64	80						
	합성 총 보수비용	64	8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총 보수비용	51	63						
	합성 총 보수비용	51	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총 보수비용	62	78						
	합성 총 보수비용	62	8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총 보수비용	50	61						
	합성 총 보수비용	50	67						
<b>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b>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총 보수비용	151	206	218					
	합성 총 보수비용	151	206	22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총 보수비용	95	141	151					
	합성 총 보수비용	95	141	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총 보수비용	84	171	191					
	합성 총 보수비용	84	171	1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총 보수비용	61	124	137					
	합성 총 보수비용	61	124	1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총 보수비용	39	80	88					
	합성 총 보수비용	39	80	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형(C-W)	총 보수비용	38	77	84					
	합성 총 보수비용	38	77	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총 보수비용	63	129	145					
	합성 총 보수비용	63	129	1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총 보수비용	50	103	114					
	합성 총 보수비용	50	103	1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총 보수비용	61	125	140					
	합성 총 보수비용	61	125	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총 보수비용	49	101	112					
	합성 총 보수비용	49	101	117					
<b>최초설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b>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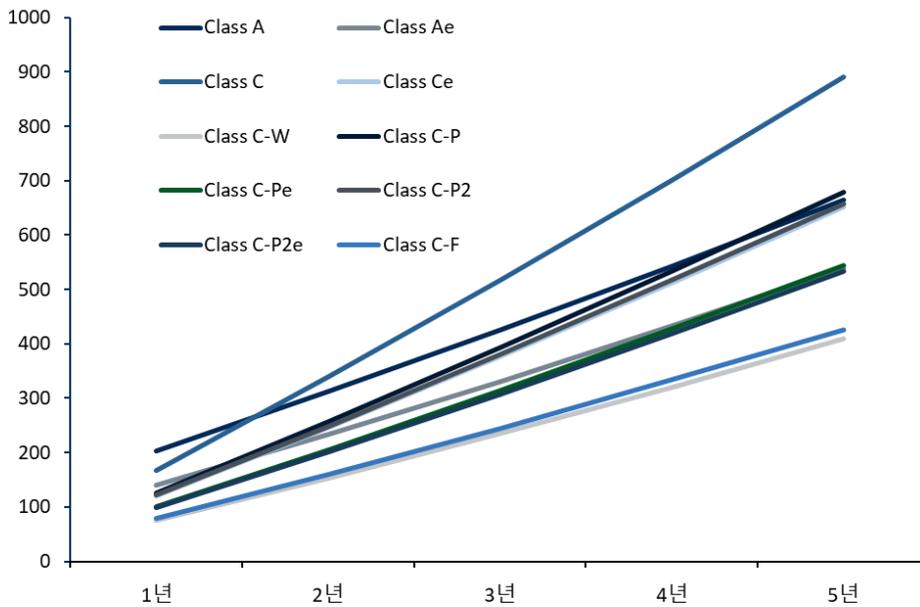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총 보수비용	151	204	258	313	325					
	합성 총 보수비용	151	204	258	313	33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총 보수비용	94	140	186	233	243					
	합성 총 보수비용	94	140	186	233	2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총 보수비용	83	167	253	341	362					
	합성 총 보수비용	83	167	253	341	3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총 보수비용	60	121	183	247	261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1	183	247	2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총 보수비용	39	78	118	159	167					
	합성 총 보수비용	39	78	118	159	1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총 보수비용	37	75	114	153	160					
	합성 총 보수비용	37	75	114	153	1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총 보수비용	62	126	191	257	273					
	합성 총 보수비용	62	126	191	257	2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총 보수비용	50	101	152	205	217					
	합성 총 보수비용	50	101	152	205	2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총 보수비용	60	122	185	249	265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2	185	249	27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총 보수비용	49	99	149	201	212					
	합성 총 보수비용	49	99	149	201	218					
<b>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b>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총 보수비용	151	203	256	310	364	419	432			
	합성 총 보수비용	151	203	256	310	364	419	437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총 보수비용	94	139	185	231	278	325	335			
	합성 총 보수비용	94	139	185	231	278	325	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총 보수비용	83	166	251	337	424	512	533			
	합성 총 보수비용	83	166	251	337	424	512	5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총 보수비용	60	120	182	244	307	371	384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0	182	244	307	371	3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총 보수비용	39	78	117	157	198	239	247			
	합성 총 보수비용	39	78	117	157	198	239	2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총 보수비용	37	75	113	151	190	230	237			
	합성 총 보수비용	37	75	113	151	190	230	2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총 보수비용	62	125	189	254	320	386	402			
	합성 총 보수비용	62	125	189	254	320	386	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총 보수비용	50	100	151	203	255	308	320			
	합성 총 보수비용	50	100	151	203	255	308	3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총 보수비용	60	121	183	246	309	374	389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1	183	246	309	374	395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주식)  
 (운용전환일 이후) 베어링주주가치성장목표전환증권투자신탁2호(채권-재간접형)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총 보수비용	49	98	148	198	250	302	313			
	합성 총 보수비용	49	98	148	198	250	302	318			
<b>최초설정일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b>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총 보수비용	151	203	255	308	362	416	471	526	539	
	합성 총 보수비용	151	203	255	308	362	416	471	526	544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총 보수비용	94	139	184	230	276	322	369	417	427	
	합성 총 보수비용	94	139	184	230	276	322	369	417	4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총 보수비용	82	166	250	335	420	507	594	682	703	
	합성 총 보수비용	82	166	250	335	420	507	594	682	7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총 보수비용	60	120	181	242	304	367	430	494	508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0	181	242	304	367	430	494	5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총 보수비용	38	77	117	156	196	237	277	319	327	
	합성 총 보수비용	38	77	117	156	196	237	277	319	33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총 보수비용	37	74	112	150	189	227	267	306	313	
	합성 총 보수비용	37	74	112	150	189	227	267	306	3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총 보수비용	62	125	188	253	317	382	448	515	531	
	합성 총 보수비용	62	125	188	253	317	382	448	515	5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총 보수비용	50	100	150	201	253	305	357	411	422	
	합성 총 보수비용	50	100	150	201	253	305	357	411	4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총 보수비용	60	121	182	244	307	370	434	498	514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1	182	244	307	370	434	498	5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총 보수비용	49	98	147	197	248	299	350	402	413	
	합성 총 보수비용	49	98	147	197	248	299	350	402	419	
<b>최초설정일로부터 만기(5년)까지 운용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b>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총 보수비용	151	203	255	308	361	414	468	523	578	633
	합성 총 보수비용	151	203	255	308	361	414	468	523	578	633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총 보수비용	94	139	184	229	275	321	367	414	461	508
	합성 총 보수비용	94	139	184	229	275	321	367	414	461	5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총 보수비용	82	165	249	333	418	504	590	677	765	853
	합성 총 보수비용	82	165	249	333	418	504	590	677	765	8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총 보수비용	60	120	180	241	303	365	427	490	554	618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0	180	241	303	365	427	490	554	6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총 보수비용	38	77	116	156	195	235	276	316	357	398
	합성 총 보수비용	38	77	116	156	195	235	276	316	357	3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총 보수비용	37	74	112	150	188	226	265	304	343	383
	합성 총 보수비용	37	74	112	150	188	226	265	304	343	3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총 보수비용	62	125	188	252	316	380	445	511	577	644
	합성 총 보수비용	62	125	188	252	316	380	445	511	577	6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총 보수비용	50	99	150	201	252	303	355	407	460	513

-개인연금형(C-Pe)	합성 총 보수-비용	50	99	150	201	252	303	355	407	460	5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총 보수-비용	60	121	182	243	305	368	431	494	558	623
	합성 총 보수-비용	60	121	182	243	305	368	431	494	558	6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총 보수-비용	49	97	147	196	247	297	348	399	451	503
	합성 총 보수-비용	49	97	147	196	247	297	348	399	451	503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투자수익률은 아래 각각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가정하여 기간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운용전환이 되는 경우 : 종류 A 기준 8% (운용전환일 이후 1.5%)  
 나. 만기까지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 종류 A 기준 투자기간동안 총 8%
- 주2) 상기 도표는 운용전환일 이후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연간 약 0.10%](피투자집합투자기구 평균 운용보수는 연 약 0.10%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 비용은 제외)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이 투자신탁이 투자기간(최대5년) 동안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였을 경우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설정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의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내용으로 국내법과 국내의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 및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관한 설명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임을 전제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과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투자자 개인의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에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②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분배되는 이익 및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거주자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되며, 판매회사가 원천 징수합니다. 거주자 개인의 금융종합소득(배당, 이자 소득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은 전체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현재 최고 24.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연금외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등에 따라 과세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사건”이라 함)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정통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 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최초설정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관계로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초설정일 이후 1년 경과되지 않아 회계법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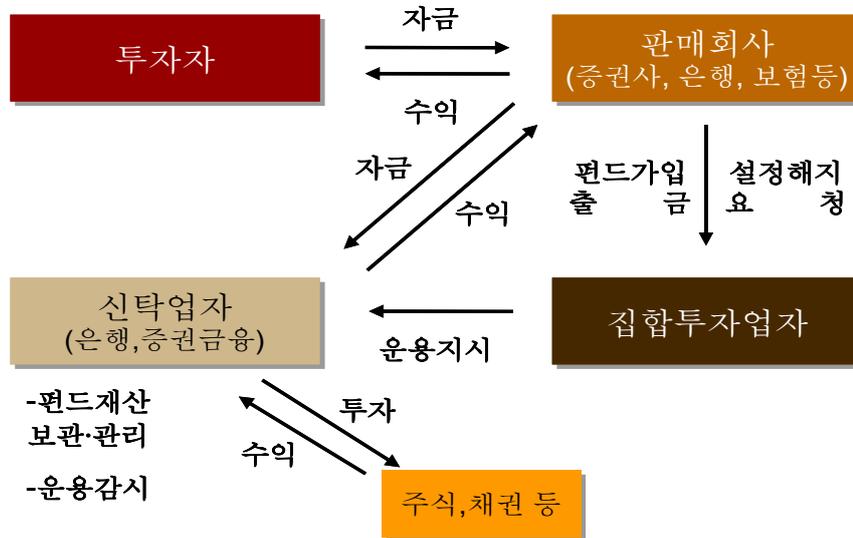
#### 나. 연도별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베어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04523)서울시 중구 을지로29, 7층 (02)3788-0500 / www.barings.com/ko	
회사연혁	1991.07	에셋코리아(주) 창립(자본금 5억)
	1997.02	에셋코리아-동양투자자문 합병(자본금 30억)
	1998.07	투자일임업무 자격획득
	1999.02	자산운용사 허가 취득 및 등록(자본금 70 억)
	1999.03	SEI Investments, IFC 와 합작
	2002.04	자본금 증자(자본금 120 억)
	2004.07	MetLife Inc. Holdings가 지분 인수 (34.0%)
	2013.03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가 지분인수(100%)
자본금	120억원	
주주현황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100%

#### 나. 주요 업무

#####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②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FY 2024 2024.12.31 현재	FY 2023 2023.12.31 현재	항 목	FY 2024 2024.01.01~ 2024.12.31	FY 2023 2023.01.01~ 2023.12.31
유동자산	96,209	88,943	영업수익	38,215	31,773
비유동자산	2,785	3,876	영업비용	18,142	17,402
<b>자산총계</b>	<b>98,994</b>	<b>92,819</b>	<b>영업이익(손실)</b>	<b>20,073</b>	<b>14,371</b>
유동부채	9,384	9,029	영업외수익	0	2,519
비유동부채	1,155	2,260	영업외비용	0	0
<b>부채총계</b>	<b>10,539</b>	<b>11,289</b>	<b>경상이익(손실)</b>	<b>20,073</b>	<b>16,889</b>
자본금	12,000	12,000	특별이익	0	0
이익잉여금	76,405	69,530	특별손실	0	0
자본조정	0	0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	20,073	16,889
<b>자본총계</b>	<b>88,405</b>	<b>81,530</b>	법인세 비용	4,198	3,490
<b>부채 및 자본총계</b>	<b>98,994</b>	<b>92,819</b>	<b>당기 순이익(순손실)</b>	<b>15,875</b>	<b>13,399</b>

**라. 운용자산규모 (2025.07.25 현재, 단위: 억원)**

집합투자 기구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MMF	혼합자산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계약	재간접					
수탁고	15,959	938	1,062	0	1,762	0	2,721	0	538	22,980

주1)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운용자산 제외한 수치임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04632)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02)1599-5000 / www.wooribank.com
회사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2) 주요 업무

-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신탁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⑨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의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02) 6714-4600 <a href="https://www.hanais.co.kr">https://www.hanais.co.kr</a>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① 주요 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자산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03131) 서울 종로구 을곡로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02)399-3350 <a href="http://www.koreaap.com">www.koreaap.com</a>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4층 (02)3215-1400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19 (02)398-3900 <a href="http://www.npricing.co.kr">www.npricing.co.kr</a>	(03162)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태화빌딩 4층 (02) 721-5300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연혁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 ②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모두자신탁의 투자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두자신탁의 투자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투자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투자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에게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첫 문장)에 따른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2항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합니다. 연기투자자총회의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0분의 1이상"으로 적용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주체<sup>1</sup>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주체<sup>1</sup>: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칭),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 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견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arings.com/ko](http://www.barings.com/ko))·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	<p>- 거래 증권사 및 선물회사의 선정기준은 저비용(Lowest cost) /중개능력(Best execution)</p> <p><b>저비용(Lowest Cos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 채권시장의 특성상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는 증권사별 경쟁에 의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래에 따른 명목 비용은 동일함</li> <li>2. 비용(Cost) 개념은 단지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지연에 따른 시간비용(timing cost)과 체결실패에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경우 중개회사별로 거래비용(Cost)이 달라질 수 있음</li> </ol> <p><b>중개능력(Best Execution)</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호가의 정확성과 신속한 체결 능력이 증권사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li> <li>2. 중개회사의 팀워크와 개별 브로커의 능력을 감안하여 거래 우선순위 결정</li> </ol> <p><b>중개회사의 안정성</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고려</li> <li>2. 매매와 관련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회사</li> </ol> <p>- 당사는 매 분기별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Analyst), 트레이더의 브로커(Broker) 평가회의에 따라 중개회사를 평가 하고 다음 분기 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함</p> <p>- 결정에 따른 중개회사별 거래순위 기준(guideline)을 월별로 점검하고 차이 원인 등을 분석</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구 분	내 용
투자주체	- 베어링자산운용
투자목적	-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 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 가능
투자시기 및 금액	- 최초설정일에 2 억원을 일시 납입 예정
투자기간	- 최소 3 년이상. 다만, 3 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 까지
투자금 회수 계획	- 최소 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 최소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 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 시차를 두며, 1 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

주1)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당연 해지 사유 발생
-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 하는 경우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산운용사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받는 자산운용사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인덱스형투자신탁입니다.
파생상품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에 제한없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와 일부 유동성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일별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사모펀드와 일부 요건을 충족한 공모펀드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신탁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경우, 판매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환매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b>Active</b>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b>ABS</b>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